



부 산 광 역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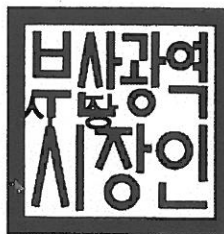


수신 사단법인 아름누리 이사장 귀하
(경유)

제목 사단법인 아름누리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알림

1. 관련: 아름누리 제2021-1호(2021.8.19.)호
2. 사단법인 아름누리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(질의) 사단법인 아름누리를 해산시 재산(잔여재산)을 종교단체인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(세무서인가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605-82-62132)으로 기증(귀속, 증여) 가능한지 여부
(답변) 민법 제80조(잔여재산의 귀속) 제1항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**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**해야 함.
 - 사단법인 아름누리 정관 제39조(해산) 제2항은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게 되어 있으므로,
 - 사단법인 아름누리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기증 대상은 주무관청인 부산시의 승인을 얻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만 해당함.
 - 나. (질의) 사단법인 아름누리 자산을 적절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종교단체인 대한 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(세무서인가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605-82-62132)에 매각 할 수 있는지 여부
(답변) 기본재산의 매도, 증여, 교환(대체)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. 주무관청에서는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,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의 적법성, 처분의 구체성 등을 확인 및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함. 끝.

부 산 광 역



주무관 김준우 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과장 전결 2021. 8. 24.
 팀장 조경 정태효

협조자

시행 복지정책과-4327 (2021. 8. 24.) 접수 2021. 8. 27

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/ <http://www.busan.go.kr>

전화번호 051-888-3144 팩스번호 051-888-3149 / jwk515@korea.kr / 부분공개(5)

내게 힘이되는 행복도시